

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이효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

발 의 자 : 이효상, 서경환, 권태호
김경환, 이복희, 김영길,
천병태, 김순점, 강혜순,
오세라 (10명)

1. 제정이유

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~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함 (안 제5조)
- 마.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- 사.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아.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근거법규

- 도로교통법

4. 제정조례안 : “따로 붙임”

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(이하 “법” 이라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(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2. “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”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3. “초등학교등”, “노인복지시설등”, “장애인복지시설”, “도로부속물”, “노상주차장” 등의 용어는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·개선, 교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② 모든 구민(구의 주민을 말한다)은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

안전을 위한 구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.

제4조(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(이하 “보호구역”이라 한다)의 체계적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관리계획에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호구역의 현황
2. 개선목표 및 방향
3. 보호구역안의 신호기·안전표지에 관한 사항
4.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·정비·유지에 관한 사항
5.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
6.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해마다 수립·시행하는 관리계획의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도 또한 같다.

④ 구청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해마다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6조(교통안전교육)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의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,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하여 교육을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
2.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
3.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

제7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구청장은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의 관할구역 경찰관서·교육청, 구 소재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교통지도) 구청장은 초등학교등과 노인복지시설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계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에서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9조(경비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, 개선, 보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근거법규

도로교통법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,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2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
- 3의2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

시설

-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